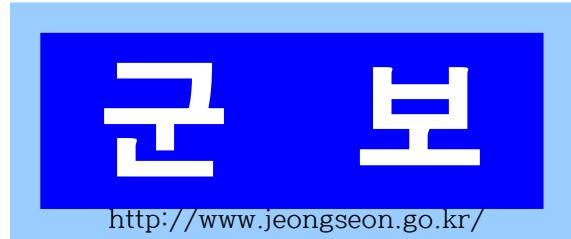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62호 2012. 3. 7. (수)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2-19호 병방산 군립공원 조성 공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결정
고시..... 1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2-117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고..... 4
- 정선군공고 제2012-121호 정선군 2012년 여행바우처 사업 공고..... 5
- 정선군공고 제2012-13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9
- 정선군공고 제2012-140호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14
- 정선군공시 제2012-148호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 16
- 정선군공고 제2012-165호 2012년 제20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상징물 공모.. 17
- 정선군공고 제2012-166호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25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2-19호

병방산 군립공원 조성 공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결정 고시

정선군고시 제2011-110호(2011.09.30)로 결정 고시된 병방산 군립공원 공원계획 결정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일

정 선 군 수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정선군 정선읍 북설리 산 105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휴양 및 편익시설
- 명 칭 : 짚-와이어(자연체험시설) 설치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단위 : m²)

시설명	공 원 계 획 결 정(m²)		공원사업 시행계획 인가(m²)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 · 규모	기시행	금회시행		향후계획	
				당초	변경		
휴양편익 시 설	짚·와이어 자연체험시설	8,529	-	건축면적 912	8,529	-	정선군고시 제2011-110호 (2011.09.30)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성 명 : 정선군수(녹색환경과장)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착 수 일 :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12. 6.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불임

사.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기본구조 내역 : “별도비치”

※ 공원사업 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정선군 녹색환경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줍니다. 공원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 정선군청 녹색환경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033-560-2330, 정선군청 녹색환경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1) 토지 (짚와이어 자연체험시설)

(단위 : m²)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정선읍 북실리	산105	임	8,529	8,529	정선읍 용탄리 25	고용균			

공 고

정선군공고 제2012-117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2월 23일

소하천명	사 업 개 요								비고	
	공사명	공사위치		사 업 량(m)			공사기간			공사목적
		시점	종점	축제	호안	기타	착공	준공		
기 우 천	2012소하천 (기우천)정비	북실리 259	북실리 693-3		600		‘12.02	‘12.12	수해피해로부 터 주민의 생 명과 재산의 보호하고 주 민들의 안정 적인 영농생 활을 위하여	손실 보상
의 림 천	2012소하천 (의림천)정비	예미리 302-1	예미리 45-11		500		‘12.02	‘12.12		“
고 양 천	2012소하천 (고양천)정비	여량리 418-6	고양리 16-2		1,000		‘12.02	‘12.12		“
여 탄 천	2012소하천 (여탄천)정비	여탄리 315	여탄리 산90		500		‘12.02	‘12.12		“
			- 이	하	여	백 -				“

※ 열람서류

1. 토지조서 1부.
2. 실시설계도서(건설방재과 비치)
3. 위치도(건설방재과 비치)

정선군 공고 2012-121호

정선군 2012년 여행바우처 사업 공고

정선군에서는 평소 국내여행을 즐기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내여행 경비의 일부 지원하는 여행바우처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2. 02. 27.

정 선 군 수

1. 여행바우처 종류

○ 개별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개인명의로 카드 발급하여 개별여행 지원

○ 복지시설 단체바우처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명의로 카드 발급하여 단체여행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으로 참가자 구성)

○ 지자체기획 바우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소외계층 단체여행 지원

2. 신청자격 및 모집 인원

○ 개별바우처 및 복지시설 단체바우처 : 44명 예정(개별 20, 단체 2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자활근로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전산망 자격검증 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자체기획 바우처 : 별도 공고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모든 사람

※ 개별, 복지시설, 지자체기획 바우처 중 1개 분야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복지시설에서 바우처 수혜를 받거나 지자체기획 바우처에 여러 번 참여할 수 없음

3. 신청방법

○ 개별바우처

- 여행바우처 웹사이트(www.tvoucher.kr) 가입 후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웹사이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접수처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만14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의 본인이 신청하되, 신청자가 만14세 미만일 경우 카드 발급받을 대리인을 반드시 명기
- 가구 내에서 1명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 시 접수 거부 및 탈락 조치)
- 2011년 여행바우처(개별·복지시설·지자체기획)를 이용한 자는 신청 불가
- 자격 증명을 위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음(단,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차상위증명서'를 첨부하여 방문 신청)
- 가족동반을 선택할 경우 동반가족의 신상명세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신청자와 동반가족은 (1)모두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법정차상위계층이면서 (2)보건복지부 전산망에서 '동일 가구'로 관리되는 가구원이어야 함

※ 신청자 본인과 동반가족 중 한 명이라도 자격검증에서 탈락할 경우 모두 추첨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 후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함

○ 복지시설 단체바우처

- 반드시 여행바우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시설이 일괄 신청하되, 신청 당시에 여행 참가자 명단을 입력
- 2011년 여행바우처(개별·복지시설·지자체기획)를 이용한 자는 신청 불가(단, 지원받은 적이 없는 자로 참가자를 구성할 경우 신청 가능)
- 시설현황, 기획의도, 신청취지, 특이사항을 온라인 웹사이트에 기입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을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 그 외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및 증빙도 함께 제출
- 여행 참가자가 중증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인솔자(봉사자)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솔자(봉사자)가 기초·차상위 등이 아니어도 여행 참가자(준회원)로 보아 필수 인원만큼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 가능(단, 인솔자 또는 봉사자에 대해 과도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복지시설 등에서 일부 부담하게 하는 등 국가 지원과 자부담 병행)

○ 지자체기획 바우처 : 별도 공고

4. 바우처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5만원 (개별여행 가족동반의 경우 30만원)
 - 바우처(신용 혹은 체크카드)를 통한 여행경비 일부 지원
- 개별바우처 카드 사용처
 - 여행사를 이용하는 경우
 - ▶ 신한카드에 “관광여행업”으로 가맹된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 ① 단체여행(패키지)상품 ② 숙박, 교통, 입장권, 렌터카 등 단독 상품
 -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 국내선 항공권 구입
 - ▶ 철도탑승권 구입
 - ① KTX 등 한국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열차 탑승권
 - ② 내일로탑승권 등 특수 탑승권 포함(단, 철도상품권은 지원하지 않음)
 - ▶ 주요 테마파크 및 워터파크(구체적인 명단은 홈페이지 참조)
 - ▶ 신한카드에 “숙박업”으로 가맹된 숙박업소(호텔, 모텔, 펜션 등)
- 복지시설 단체바우처 카드 사용처
 - 선정된 복지시설은 (1)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신한카드로 송부하고, (2) 여행바우처 웹사이트에서 공개견적 요청을 통해 여행사 선정
 - 온라인 공개견적을 통해 채택된 여행사에서만 결제 가능
 - 여행 전 전체 견적의 50%를 선금 결제하고, 여행 후 잔금을 결제
 - ▶ 여행 불참자에 대한 배정예산(인원수×15만원)은 사용해서는 안 됨
 - ▶ 당일 취소 등으로 인한 여행사의 취소 수수료는 시설에서 별도 부담 (바우처 카드로 결제해서는 안 됨)

5.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기간 : 2012. 2. 27(월) ~ 2012. 3. 7(수)
- 접수기간 : 2012. 3. 8(목) ~ 2012. 3. 22(목) 18:00까지
 - 접수방법 (해당 접수기간 신청자에 한해 유효 처리)
 - ▶ 온라인 :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신청
 - ▶ 방 문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6. 향후 일정 안내

- 선정 결과 공지 : 2012. 3. 28일 여행바우처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추첨 및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선정 (접수 순서대로 선정되는 것이 아님)
- 바우처 카드 발급 : 4월 이후
 - 개 별 : 공고 후 신한카드에서 본인에게 전화 확인 거쳐 카드 발급
 - 복지시설 : 신청서를 신한카드로 송부하고 공개견적을 통해 여행사 채택하면 자동으로 카드 발급
- 바우처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12. 11. 30일까지

7.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바우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혹은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선정 무효 및 향후 여행바우처 수혜자로 선정됨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은 때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신청 서류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착오 없이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바우처 카드발급 등이 유선 안내되며(개인에 한함),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도 안내조치 없음(홈페이지에서 확인)
- 여행상품 변경, 취소 등은 여행사와의 계약 및 여행약관에 따라 처리되며, 본인 사정에 의한 상품 취소 등으로 인한 수수료 발생 분은 바우처에서 지원되지 않음
- 여행 시 안전과 사고발생 시 보장 등을 위해 여행자보험 가입 권장
- 2012년 여행바우처에 선정된 후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2013년에는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함

※ 문의처 :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여행바우처 업무담당자 ☎ 560-2368

정선군 공고 제 2012-13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2 월 28 일

정 선 군 수

1. 규 칙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음주운전은 지방공무원 비위의 45%를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이나 이에 대한 독자적인 징계기준이 없고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2011.11.01.)으로 음주운전 3진 아웃제가 도입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독자적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 : 안 제2조 별표1
- 음주운전에 대한 세부징계기준 마련 : 안 제7조 별표5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 (FAX 560-2592)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전화 560-2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②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③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음주운전 처리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징계양정기준(제2조 관련) - 비위항목 추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 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 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 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공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마. 음주운전	별표 5와 같음			
마.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별표 5]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제7조 관련) - 징계기준 추가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계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관 계 법 령 발 취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 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고가 일어난 곳
 -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정선군공고 제 2012-140호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5.

정 선 군 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2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아래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간 : 2012년 3월 5일 ~ 3월 25일
- 장 소 :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 열람대상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3번지외 10,632호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2년 3월 5일 ~ 3월 25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 제출방법 :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의견제출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19만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12. 1. 1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의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취득세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는 이 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정선군공시 제2012-148호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2년 3월 2일
정 선 군 수 인

사본의 종류	일반사본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고
선 거 인 명 부	64원 (A4용지 1매당 작성비용)	광학디스크(CD) 700원+(23원×면수) A4용지기준	
부재자신고인명부	64원 (A4용지 1매당 작성비용)	광학디스크(CD) 700원+(23원×면수) A4용지기준	

정선군 공고 제2012-165호

2012년 제20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상징물 공모

2012년 9월 정선군에서 개최하는 제20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상징물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년 3월 5일

정 선 군 수

◆ 대 회 개 요 ◆

- 대 회 명 : 제20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 대회기간 : 2012. 9월중 (3일간)
- 대회장소 : 정선종합운동장 외 각 종목별 경기장
- 경기종목 : 21개 종목
- 주최/주관 : 강원도,강원도체육회/정선군,정선군체육회

①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12년 제20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상징물 공모
- 공모기간 : 2012. 3. 5 ~ 3. 24(20일간)
- 응모자격 : 제한없음(전 국민 누구나)
- 공모부문 : 2개 부문 6점(당선작 및 가작)
 - ▶ 슬로건(구호) : 2점(당선작 1점, 가작 1점)
 - ▶ 표 어 : 4점(당선작 1점, 가작 3점)

② 공모주제

- 제20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뜻과 이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내용
-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의 도시브랜드를 부각시킬 상징적 이미지와 함께 강원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
- 「화합·질서·문화·경제」체전의 대회목표를 함축 표현할 수 있는 내용

③ 출품규격 및 응모요령

부문별	출품규격 및 응모요령
슬로건	○ 붙임서식 1에 의거 작성 제출(2점 이내)
표어	○ 16자 이내 ○ 출품제한 : 이미 공개된 작품이나 모방한 작품

④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처 :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생활체육 (☎ 033-560-2561)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 ▶ 주소 : (우)233-70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봉양리 267번지)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생활체육담당 앞
 - ▶ 이메일 : hangnyun@korea.kr
- ※ 우편접수는 '12. 3. 24까지 우체국 소인된 작품에 한하여 심사
- ※ 이메일 접수는 '12. 3. 24. 24:00까지 접수된 작품에 한하여 심사
- 제출서류 : 붙임 서식 1, 별지서식

수 심사 및 발표

- 심사방법 : 별도 심사계획 수립
- 결과발표 : 4월중 개인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 발표 시기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상내역 : 금1,550,000원(금일백오십오만원)

부문별	작 품 수(점)			시 상 금(천원)			비고
	계	당선작	가작	계	당선작	가작	
계	6	2	4	1,550(6)	800(5)	750(4)	
구 호	2	1	1	800(2)	500(1)	300(1)	
표 어	4	1	3	750(4)	300(1)	450(3)	가작 각150천원

※ 작품수준 미달시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숙 응모시 유의사항

- 신청서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요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지정 양식 이외

의 서식으로 제출된 작품은 심사제외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은 정선군에 귀속됨과 동시에 작품의 수정, 보완 및 제작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정선군에 있음.
- 응모작품은 국내·외의 저작권·특허권·의장등록권·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순수 창작품이어야 함
- 당선작품이 제3자를 모방 또는 타인이 사용 중인 것과 유사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상 취소와 함께 시상금을 회수하며, 이로 인하여 정선군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 있음
- 당선작중 이미 공개 또는 발표된 디자인이나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작품은 입상이 결정된 후에도 그 입상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고내용 및 미공시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해석은 정선군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동일한 작품 접수시 먼저 접수된 작품만 유효 작품으로 인정
- 응모 신청서 및 제출서류 서식은 정선군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다운로드 사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생활체육부서(☎033-560-2561, 2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접수일자	
접수번호	

제20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상징물 공모 참가 신청서			
슬로건 () 표어() * 해당부문에 √ 표시			
출 품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핸 드 폰
	이 메 일		
슬로건 또는 표어	(16자 이내)		
작품설명	(작품설명을 요약하여 기술, 설명내용이 지면을 초과할 경우 별지서식에 의거 제출)		
『제20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상징물 공모에 제출된 응모작품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한은 정선군에 귀속되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상징물 현상공모전 작품을 출품합니다. 2012년 월 일 출품인 성명 : (서명) 정선군수 귀하			

※ 우편접수시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음

『제20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상징물 응모 접수증

부 문 별	구 호 ()	표 어 ()	성 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단체명)	

【별지서식】

제20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상징물 응모작품 설명서

응모부문	구 호() 표 어()
------	---------------

(작품설명을 요약하여 기술)

참 고 자 료

강원도 슬로건(구호)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

강원도 마크



전체적으로는 풍요롭고 생동감 있게 발전하는 강원도를 상징.
 각 색상에는 강원도를 상징하는 의미를 내포(도민화합, 도의 이미지 표상)
 - 청색 의 타원은 안정된 마음의 고향인 대지를 의미
 - 녹색 은 깨끗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의미
 - 황색 은 유구한 역사적 문화환경을 의미하며 안정된 사각형으로
 자연과 문화의 조화 표현
 - 가운데 나뭇잎 모양은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도민의 마음이 담겨 있다.

강원도 브랜드 슬로건

Lively Gangwon 의 의미 : 생명력 있고 살아숨쉬는 땅,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희망의 강원도



그린과 블루컬러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청정한 동해를 의미하며 생명·건강과 자연관광산업의 최적지인 강원 가치의 상징 **i** 강원 미래인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는 강원인의 뜨거운 열정과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표현 **Lively** 서체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풍요롭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강원을 표현 **Gangwon** 서체는 한결같은 믿음, 안정된 마음의 고향인 하늘내린 땅 강원을 표현

강원도 캐릭터(반비)



반비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캐릭터로서 강원도의 상징동물인 반달곰을 의인화 하여 믿음직스러우며 다정다감한 이미지로 형상화 하였다.
 '반비'이름은 “미래로, 세계로, 통일로 비상하는 반달곰”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강원도 상징



강원도의 꽃 : 철쭉



강원도의 나무 : 잣나무



강원도의 새 : 두루미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정선군 슬로건(구호)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

정선군 심볼마크



수려하고 청정한 고원관광지와 정선아리랑의 춤사위를 형상화한 자연 친화적 형태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진취적인 군의 발전을 상징한다.

정선군 캐릭터

산아리



정선군이 맑고 푸르른 정선군민의 순후한 인심과 삶의 애환을 노래한 정선아리랑의 아리를 함축하여 산아리라 하였으며 맑은 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자연에 순응하며 살고 삶이 주는 고단함을 아라리 가락에 실어 보내며 아름답게 살아가려는 정선사람들의 아름답고 순박한 삶을 의미함

정선아리랑



기존 아리랑의 이미지를 반영하면서 정선아리랑의 춤사위와 소리를 색감으로 연상되도록 디자인. 정선의산자락과 강줄기를 아리랑가락으로 형상화하여 아리랑의 희로애락을 상징

정선군 브랜드 슬로건



즐거움과 흥, 정선사람의 따뜻함을 의미하는 레드색상을 바탕으로 굽이굽이 흐르는 강과 산세의 자연 형상과 흥에 겨운 아리랑 가락을 곡선으로 강조하여 전통과 미래가 조화를 이룬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선을 표현

정선군 상징



군화 : 동강할미꽃

거친 자연환경 등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함을 잃지 않는 정선인의 굳은 의지와 미래를 향한 열정을 상징
(2000년 세계유일의 한국산 특산식물로 지정)



군목 : 생강(동박)나무

거친 자연환경 등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함을 잃지 않는 정선인의 굳은 의지와 미래를 향한 열정을 상징
(2000년 세계유일의 한국산 특산식물로 지정)



군조 : 황조롱이

거친 자연환경 등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함을 잃지 않는 정선인의 굳은 의지와 미래를 향한 열정을 상징
(2000년 세계유일의 한국산 특산식물로 지정)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정선군공고 제2012-166호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등 공고

「공직선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정 선 군 수 [인]

1. 열람기간

2012년 3월 3일부터 5일간(공휴일 등을 불문하고 공무원의 정상
2012년 3월 7일까지) 근무일의 근무시간중)

2. 열람시간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열람은 열람시간 제한 없음)

3. 열람장소

장 소 명	소 재 지	비 고
정선읍사무소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31(봉양리 210-1)	
고한읍사무소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고한리 125-4)	
사북읍사무소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65(사북리 317-26)	
신동읍사무소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예미리 759)	
화암면사무소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0(화암리 393-1)	
남 면사무소	정선군 남면 칠현로 80(문곡리 103-1)	
여량면사무소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여량리 305-3)	
북평면사무소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6(북평리 222-2)	
임계면사무소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75(송계리 773-1)	

4.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주소 : <http://www.jeongseon.go.kr>

5. 인터넷 열람방법

정선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거인명부 열람 배너창의 선거인명부 열람을 클릭
하시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